

# 日本の 高等教育에 관한 調査研究機構

## —大學關係團體를 中心으로—

宋 在 萬

(弘益大 大學院長)

### I. 머리말

오늘날 日本에는 高等教育·大學問題를 專門으로 調査·研究하는 獨立의 機關은 아직 設置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高等教育·大學問題를 다른 文獻資料를 收集하거나 情報서비스를 一元적으로 다루고 있는 正規의 機關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專擔은 하지 않더라도 政府機關 또는 民間의 團體에 의하여 이 方面의 調査·研究는 多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各種機關에서 調査·研究된 資料들은 日本 高等教育의 改革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現在 日本에 存在하는 高等教育·大學問題의 調査·研究에 큰 몫을 맡은 諸機關들을 概括적으로 알아보는데 焦點을 두고, 특히 大學關係團體의 活動에서 顯著的 役割을 함으로써 重要한 位置를 점하고 있는 日本私立大學聯盟을 紹介하고자 한다.

### II. 高等教育, 大學問題에 관한 調査·研究 關聯 機關의 概況

#### 1. 政府機關

全國레벨의 高等教育·大學에 관한 權威 있는 情報, 統計, 公式文書 등은 政府機關, 특히 日本 文部省에 의하여 産出되고 있다.

#### (1) 文部省

文部省에서는 高等教育에 관한 出版物, 統計 데이터, 調査報告書 등의 公式資料를 制作保有하고 있다. 高等教育關係는 大學學術局에서, 私立大學關係는 管理局에서 擔當하여 開發하고 있다. 또 省內에 設置된 財團法人 文教協會를 통하여 資料들을 出版·販賣하고 있다.

#### (2) 國立教育研究所

所內의 第1研究室, 第2研究室은 高等教育을, 第3研究室은 高等教育의 比較研究를 擔當하고 있다. 그리고 最近 여러 해 동안 이 方面의 세미나 또는 研究會議 등을 實施해 오고 있다. 研究陣이나 資料面에서 比較的 잘 整備되어 있다.

#### (3) 國立國會圖書館

國內出版物의 納本制度에 의하여 거의 모든 資料의 收集이 되어 있으므로 公刊資料의 藏書는 質·量 공히 우수하다. 그리고 調査 및 立法考查局文教課에는 教育專門의 研究陣이 있어 教育事情의 調査를 擔當하고 있다.

#### 2. 大學關係團體

國·公·私立大學마다 공히 各各 여러 種別의 全國聯合體組織을 만들고 있으나, 모든 種類의 大學을 網羅한 全國레벨의 統一團體는 日本에서는 아직 設立된 것이 없다. 오직 民間團體인 大學基準協會가 그 大學基準을 갖춘 若干의 國·公·私立大學의 一部를 加盟校로 하여 組織되고

있을 뿐이다. 私立大學의 境遇에는 3~4個의 團體로 分裂된 채로 있으며, 私立大學 全體의 聯合體를 形成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1) 財團法人 大學基準協會

이 協會는 大學의 質的 向上을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日本에서 唯一의 國公私立大學이 加盟된 機關이다. 正(維持)會員과 贊助會員을 합하여 約 250校가 加盟하고 있다. 協會內에 大學問題 研究會가 設置되어 있으며, 機關誌「大學基準協會會報」(不定期, 年 3~4回)를 刊行하고 있다.

#### (2) 國立大學協會

이 協會는 國立大學 約 80校가 加盟한 聯合體로서 國立大學 相互間의 連絡協力과 振興에 寄與할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다. 國立大學의 大學 改革案이나 關係文書を 包括적으로 收集하고 있으므로 國立大學關係의 情報나 資料를 갖추고 있다.

#### (3) 國立短期大學協議會

이 기관은 國立短期大學 20餘個校가 加盟하고 있다.

#### (4) 公立大學協會

이 協會는 公立大學 30餘個校가 加盟한 聯合體이다.

#### (5) 全國公立短期大學協會

이 協會는 公立短期大學 40餘個校가 加盟한 機關이다.

#### (6) 日本私立大學聯盟

이 聯盟은 主로 私立의 大規模綜合大學 80餘 個校가 加盟한 가장 刮目할만한 機關이다. 機關誌인 「大學時報」를 發行하고 있다.

#### (7) 私立大學懇談會

私立大學 7個校가 加盟하고 있다.

#### (8) 日本私立短期大學協會

이 協會에는 私立의 短期大學 約 400餘個校가 加盟하고 있으며, 「短期大學教育」(年 3回), 「短大情報」(月 2回) 등을 發行하고 있다.

### 3. 個別大學

國·公·私立의 各個別大學에서는 各各 廣報誌나 學內新聞을 發行하고 있으나, 高等教育關係의 調査·研究에 專念하는 機關을 設置하고 있는 大學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 다음 大

學들에는 當該機關이 設置된 것으로 보여진다.

#### (1) 東京大學廣報委員會·資料室·改革室

이 大學의 廣報委員會에서는 各種 出版(「學內廣報」, 「改革포오람」)이나 情報提供을 하고 있으며, 改革室이나 資料室은 大學改革의 推進, 資料의 收集을 하고 있다.

#### (2) 廣島大學大學問題調査室

여기서는 專門研究陣을 두고 大學問題의 調査·研究와 資料收集을 하고 있다.

#### (3) 早稻田大學大學問題研究資料室

大學關係의 内外文獻의 收集에 있어서 特히 整備되어 있으며, 그 質과 量이 우수한 편이다.

#### (4) 慶應義塾大學塾長室企劃課

大學關係의 資料室을 갖추고 있다.

### 4. 其他의 團體

日本에 있어서는 高等教育專門의 學會는 아직 設置되지 않았고 民間에서도 高等教育의 專門研究機關은 存在하지 않는 實情이다. 다만, 國立教育研究所의 高等教育比較研究의 프로젝트나 非公式의 大學史研究會(野間教育研究所 안에 事務局이 있음) 등 若干의 研究그룹이 있을 뿐이다.

高等教育에 관한 情報提供의 其他機關으로서 는 아래와 같은 機關이 있으며, 이 밖에 民間團體나 各大學內에 非公式의 大學問題研究會가 數個 存在하며, 各其 세미나를 開催하거나 資料를 發行하고 있다.

#### (1) 日本教育學會

이 學會에는 事務局이 設置되어 있어 學會關係의 資料를 發行한다. 또 「教育學研究」(年 4回刊)를 編輯·發行하며, 大學問題를 研究하는 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 (2) 國民教育研究所

여기에는 若干의 大學問題 專門家가 있다.

#### (3) 日本私學振興財團

이 機關은 1970년에 特殊法人으로서 設置된 私學助成을 擔當하는 專門機關이다. 「月報·私學振興」기타의 刊行物을 發行한다.

#### (4) 財團法人 野間教育研究所

이 研究所는 教育史, 社會教育, 教育心理의 研究陣과 藏書를 갖추고 있으며, 日本에서 보기 드

문 民間의 教育研究所이다. 大學史, 學校史關係의 資料收集과 大學史專門家の 質이 우수하다.

### Ⅲ. 日本私立大學聯盟 등의 活動의 例

日本の 私立大學의 聯合體로서는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學聯盟을 비롯하여 私立의 單科大學을 中心으로 하여 約 200個校를 會員(加盟校)으로 갖고 있는 日本私立大學協會가 있으며, 그 밖에 私立의 短期大學만의 聯合體인 日本私立短期大學協會를 합하여 모두 3種이 있다.

그러나 日本私立大學聯盟은 上記 3種의 私大團體중에서는 물론 日本의 모든 國·公·私立의 많은 聯合體중에서도 그 活動의 比重이 가장 높은 團體라고 생각된다.

원래 日本私大聯盟은 1956년에 舊日本私大聯盟을 發展·解體하고 社団法人으로서 認可를 받아 發足하였다. 會員은 1982年現在 正會員이 75個 法人의 77個 私立綜合大學이며 4個法人의 4個大學을 準會員으로 加盟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加盟大學은 그 數가 80餘個大學에 불과하나, 全日本의 大學法人에서 차지하는 加盟大學의 財政規模의 比重은 거의 50%가 된다. 이 聯盟에는 日本의 私大중 大規模의 綜合大學이 거의 加盟된 것으로 보아 그 位置를 짐작할 수 있다.

이 聯盟은 調査企劃委員會, 大學制度研究委員會, 私立大學管理運營問題研究會, 大學管理運營研究集會運營委員會, 私學財政委員會 등의 各種委員會를 設置하고 私立大學의 管理運營에 관한 報告書, 試案 등을 作成하여 여러 차례의 提案을 하여왔고 大學의 改革에 관한 資料를 開發하여 公開하였다. 특히 世論에 많은 影響을 끼치고 日本의 私學助成에 寄與한 調査研究의 成果중에서 白眉는 同聯盟의 私學財政委員會가 1972年 以來 5回 以上에 걸쳐 刊行公表한 「財政白書」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다. 日本의 私立大學은 大學 등의 學生人口의 約 80%를 收容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1970년대초 私學의 財政은 貧弱하여 一大 危機에 處하였을 때 同聯盟은 上記의 財政白書を 시리즈로 刊行하여 國民一般으로부터 깊은 理解를 얻음으로써 私學助成의 強化

에 큰 貢獻을 한 바 있다.

(參考)

(1) 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學聯盟 定款(抄)

1956年 3月 31日 許 可  
1982年 5月 12日 變更認可

#### 第一章 總 則

第1條 (名稱) 省 略

第2條 (組織) 이 法人은 教育基本法, 學校教育法 및 私立學校法에 따라 大學(四年制大學에 限함)을 設置하는 學校法人을 會員으로 하여 組織한다.

第3條~第5條 省略

#### 第二章 目的 및 事業

第6條 (目的) 이 法人은 會員相互의 協力에 의하여 私學의 權威와 自由를 保持하고 大學의 振興과 向上을 꾀하여 學術文化의 發展에 貢獻함으로써 大學의 使命達成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7條 (目的으로 하는 事業) 이 法人은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 ① 大學에 있어서의 研究, 教育에 관한 相互援助 및 情報의 交換
- ② 大學의 管理運營에 관한 調査·研究
- ③ 大學의 管理運營, 研究·教育에 관한 會誌 및 著書의 出版
- ④ 大學의 敎職員 및 學生의 福祉, 厚生에 必要한 事業
- ⑤ 其他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事業

#### 第三章 會 員

第8條 (入會) ① 이 法人의 會員이 되고자 하면 別途로 定한 入會規定에 의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入會의 承認을 얻은 者는 入會金 및 當該年度의 會費를 納付한 날로부터 會員이 된다.

第9條 省 略

第10條 (會員의 權利義務) ① 會員은 이 法人의 定款 및 規定에 定한 바에 따라 權利를 갖고 義務를 진다.

② 會員의 議決權은 一票로 한다.

第11條~第12條 省 略

第12條의 2 (準會員) ① 이 法人에 準會員을 둘 수 있다.

② 準會員은 別途로 定한 準會員規程에 의한다.

第四章~第七章 省 略

(2) 日本私立大學協會定款(抄)

1960年 7月 18日 決定施行  
1980年 11月 27日 一部改正

第一章 總 則

第 1 條 (名稱) 이 法人의 名稱은 “日本私立大學協會”라 한다.

第 2 條~第 4 條 省 略

第二章 目的 및 事業

第 5 條 (目的) 協會는 日本의 高等教育 및 學術研究의 機關으로서의 私立大學의 地位의 重要性에 비추어 學校法人相互의 提携와 協力에 依하여 私立大學의 振興을 圖謀하고 그 使命達成에 寄與함으로써 學術 및 教育의 進歩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6 條 (事業) 協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掲載하는 事項에 관한 調査·研究 및 企劃과 그 實現에 必要한 事業을 行한다.

① 大學에 관한 制度·行政 및 國家의 文教豫算

② 私立大學의 充實한 發展에 必要한 國家의 制度 및 法令

③ 私立大學의 振興에 必要한 國家, 地方公共團體 또는 民間으로부터의 補助金, 融資金, 寄附金, 其他 財産의 讓受 등

④ 大學에 있어서의 教育內容, 施設設備, 教員組織, 運營 및 經營

⑤ 大學에 있어서의 學術研究 및 國家의 學術研究體制

⑥ 教職員の 福祉厚生 및 資質의 向上充實

⑦ 學生의 生活向上에 必要한 援護 및 厚生補導

⑧ 教育, 學術 및 文化의 國際交流

1. 協會는 學術, 教育, 文教行政, 學校經營等에 관한 圖書, 資料 等の 出版 및 機關誌紙

의 發行을 한다.

2. 協會는 日本私學振興財團, 私立學校教職員共濟組合, 私學研修福祉社會, 敎立大學審議會, 大學設置審議會 및 其他의 私立大學의 振興을 圖謀할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과의 提携, 協力 및 援助에 必要한 事業을 行한다.

3. 協會는 前項에 掲載한 諸機關 以外에 私立學校關係諸團體 其他의 教育, 學術, 文化의 關係機關과의 提携, 協力 및 援助에 必要한 事業을 行한다.

第 7 條 (業務細則) 協會의 業務의 細則에 대하여는 別途로 定한다.

第三章 調停 및 干涉의 排除

第 8 條~第 9 條 省 略

第四章 會 員

第10條 (會員) 協會는 大學을 設置하는 學校法人(短期大學만을 設置하는 學校法人을 除外함)을 會員으로 하여 組織한다.

第11條 (入會) ① 協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別途로 定한 入會規程에 따라 入會金を 添付하여 入會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申請을 한 學校法人은 理事會가 承認의 議決을 하였을 때에 會員이 된다.

第12條 (會員의 議決權) 會員은 그 議決權을 評議員에 의하여 行한다.

第13條 (會員의 權利義務) ① 會員은 恒常 私立大學의 地位의 重要性을 自覺하고 教育 및 學術研究의 進歩發達에 努力하여 私立大學의 品位와 權威을 保持·昂揚하는 동시에 協會의 目的達成에 協力하는 名譽를 가지며 義務를 진다.

② 會員은 協會가 會員의 協力에 의하여 會員을 위하여 얻은 利益을 享受할 權利를 갖는다.

③ 會員은 이 定款 및 其他의 諸規程에 定한 것 이외에 協會의 各種委員會에 參加하고 機關誌紙 其他의 資料의 優先的 配布를 받을 權利를 갖는다.

第14條~第16條 省 略

第五章~第八章 省 略

\*